

자료집

한국수산정책CEO포럼

-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포럼 -

일 시 : 2011. 11. 28(월) 11:30 - 17:00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한국수산정책CEO포럼
설립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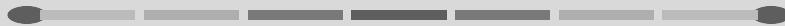
행사진행 순서

1부 창립총회		사회 :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11:30-12:00	등 록	포럼 가입서 작성
12:00-13:30	오찬	서울교육문화회관 더 파크 ※ VIP 오찬은 별도 공지
13:30-13:50	국민의례	
	개회사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축사	임광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축사	김학용 국회의원
13:50-14:10	포럼취지 설명 및 정관채택	임시의장
	임원선출(회장 및 이사)	
14:10-14:20	수락인사	공동회장
14:20-14:25	사진촬영	
14:25-14:40	Coffee Break	
2부 창립기념 포럼		사회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14:40-15:10	주제발표 1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5:10-15:40	주제발표 2 : “100대 수산현안과제”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15:40-15:50	Coffee Break	
15:50-16:20	지정토론	좌장 : 박재영 한국수산물 협회 회장 지정토론 : 정영훈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심부택 한국어류양식업연합회 회장
16:20-17:00	자유토론	
17:00 ~	폐회	

[제 1 부]

한국수산업정책 CEO포럼 창립총회

(Korea Fisheries Policy CEO Forum)



1

창립 배경

- 국제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라 수산업의 산업구조 선진화 필요성 대두
 - 국제 무역구조 변화로 한국 수산업도 글로벌 경쟁체제 진입
 - * WTO/DDA 및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
 -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 심화
 - *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수산물 소비 증가, 지구온난화 등
-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수산정책 의견 수렴 조직 필요
 -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의견 수렴 조직 부재
 - 급변하는 수산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산 거버넌스 요구
 - 수산정책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 글로벌화에 대응할 기업 중심의 수산정책 네트워크 필요성 대두
 - 기업형 정책발굴과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구심체 구축 필요
 - 수산기업 CEO 중심의 현장 밀착형 논의와 실효적 대안 제시를 통한 선진기업형 수산정책 실현

2

창립 목적

- 수산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글로벌 수산양식산업 육성, 수산식품 산업 글로벌화, 수산 신산업 발굴·확산, 수산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수산기업 CEO 등 수산정책 오피니언 리더의 통합적 논의의 장 제공
- 산·학·연·정 등 수산기업과 수산정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정비를 통해 기업 중심형의 신 수산현안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논의 체계 구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수산기업의 글로벌화와 수산업 선진화로 연결하기 위한 전문가 진단체계 구축



□ 「한국수산정책CEO포럼」 준비사무국 설치 : 2011. 7. 2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 내 설치
-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포럼 회원 구성

□ 「한국수산정책CEO포럼」 설립추진위원회 개최 : 2011. 11. 23

- 한국수산정책CEO포럼 정관(안) 심의
- 공동회장 선임
- 이사선임
- 한국수산정책CEO포럼 운영방안 논의
-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포럼 계획 논의
- KMI내에서 사무국 업무 수행



「한국수산정책CEO포럼」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수산정책CEO포럼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isheries Policy CEO Forum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한국수산정책CEO포럼(이하, 포럼)은 수산정책분야 오피니언 리더의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산·학·연·정 등 수산정책기관 간 인적·학술적 네트워크 정비를 통해, 국내·외 수산정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참신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수산정책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포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정책의 비전 제시
2. 수산정책 현안에 대한 방향과 전략 모색
3. 수산정책 분야 연구·조사·발표와 발간 활동
4. 수산정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등 개최
5. 산·학·연·정 등 수산정책기관 간 인적·학술적 협력체제 강화
6. 수산정책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7. 기타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 포럼의 사무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에 둔다.

제5조(조직)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이사회
2. 감사
3. 사무국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 ① 회원의 자격은 포럼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과 단체, 법인으로 한다.
- ② 포럼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은 수산분야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개인
 2. 기관회원은 수산분야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 및 법인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회비)

-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 법인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전자우편 또는 서면)하여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포럼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수산비전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포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3.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포럼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포럼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포럼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
4. 포럼 회비 납부 의무

제10조(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포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원이 제9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포럼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가 의결로 제명한 경우. 이때 이사회는 제명의결에 앞서 회원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 포럼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2인
2.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포럼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포럼의 공익보호와 운영을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감사의 임무는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4. 사무국장은 포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포럼의 정관에 동의하고,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인준)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내에 보선한다.

제15조(임기 및 사직)

-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두 번째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및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고문)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

- ① 한국수산정책CEO포럼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
- 2.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이사, 감사) 선출 및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등)

-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매년 11월)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 ④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 제2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경우로 한다.
- ④ 총회 의결권은 회원마다 1표로 한다.
- ⑤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제21조(이사회 구성 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회장) 및 해임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 사항
6.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관련 사항
8. 정관 개정안 마련 등 기타 포럼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 소집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 의사결의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포럼의 이해관계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포럼의 이해가 상반할 때

제26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중지, 산회 일시
 3.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수
 4. 부의 안건과 토의내용
 5.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원칙적으로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27조(이사회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 회의록에는 회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날인한다.
- ② 회의록은 포럼 사무국에서 보존·관리하고 보존연한은 중요도에 따라 5년, 10년, 반영구로 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회장은 포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선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한다.
- ④ 포럼의 회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가입해야 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에 건의 및 직접 수행·참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조사의 주제 선정과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론회(포럼)의 주제·발표자·토론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포럼의 분과별 전문성과 관련한 현안 및 장기대응에 관한 사항
4. 상근 실무자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포럼의 운영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및 긴급한 현안 사항

제 6 장 감 사

제30조(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럼의 재산과 회계의 감사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3. 포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등 각 서류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유를 발견한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에는 이사회 소집 요구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수입금) 포럼의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회비
2.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기부금, 찬조비용
3. 간행물 발행, 해양비전포럼 제반 활동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채원

제3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

- ① 회장은 매연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 ② 결산에 대해서는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사업실적 및 결산) 포럼의 매연도 사업 실적과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35조(회계감사 및 사무)

- ①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계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르되, 규정되지 않은 회계 사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포럼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참석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37조(포상)

- ① 회원과 임원이 포럼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이 포럼 또는 수산업발전에 귀감이 되는 경우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징계)

- ① 회원과 임원이 고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고, 포럼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서면 청구로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 1.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포럼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포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의 정지, 권고사퇴, 제명으로 한다.

제 9 장 사 무 국

제39조(사무국의 설치)

- ①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명과 상근직원 약간 명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복무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직원)

-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2조(준용기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사무국 설치의 경과규정)

- ① 사무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설립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 ② 사무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한다.

제2조(의사준칙) 이 정관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제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 ① 포럼의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이 선임한다.
- ② 포럼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기산한다.
- ③ 설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2013년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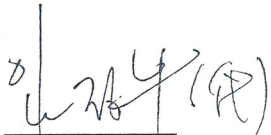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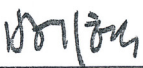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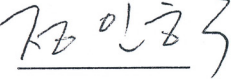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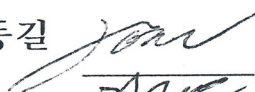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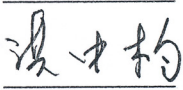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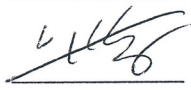
제4조(회계연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에 의한 회계연도의 시작일은 창립년도인 2011년에는 창립총회 개최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사단법인 설립준비 행위는 사단법인 “한국수산정책CEO포럼”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단법인 한국수산정책CEO포럼의 설립을 위하여 아래의 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전원은 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각 기명 날인(서명)한다.

2011년 11월 23일

정관 승인의 건

이사 :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장현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김종주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김임권	 수락
	동원산업 대표이사	박부인	
	한국수산회 회장	박재영	 수락
	한국어촌어항협회	방기혁	
	한국수산무역협회 회장	배기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장	송춘복	 수락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학장	이춘우	 수락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장경남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정인하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조동길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	한경호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홍중표	
간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김정봉	

※ 순서는 가나다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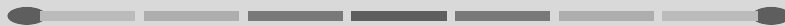


직위	성명	소속기관/ 직책	비고
공동 회장 (2인)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	前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추진 위원 (15인)	김장현	한국수산물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설립추진위원회 간사
	김종주	한국자율관리어업협회의 회장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박부인	동원산업 대표이사	
	박재영	한국수산물회 회장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배기일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회장	
	송춘복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장	
	이춘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학장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정인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조동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한경호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	
	홍종표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제 2 부]

한국수산업정책 CEO포럼 창립기념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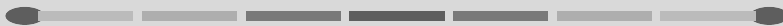
(Korea Fisheries Policy CEO Forum)



주제발표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1. 28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1. 최근 세계 경제 동향
 - 2. 2012 세계 경제 전망
 - 3. 2012 세계 무역 전망
 - 4. DDA 동향과 전망
 - 5. FTA 추진 전망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 최근 세계 경제 동향 (1)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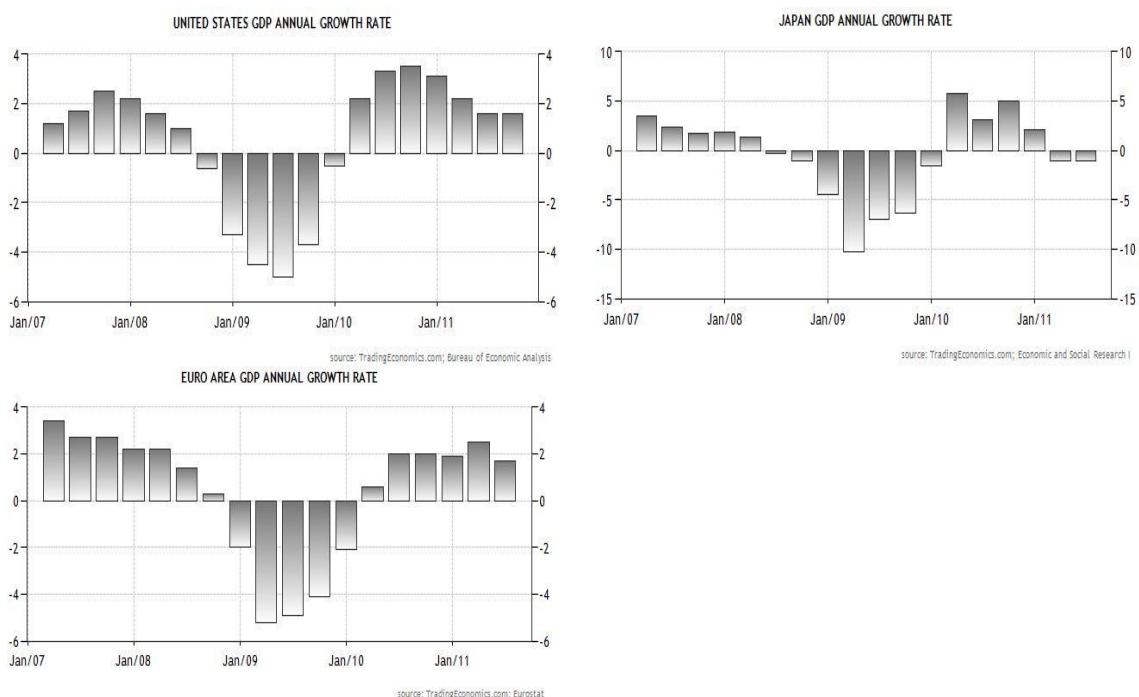
선진국

- 2011년 초만 하더라도 완전한 경제 회복
 - 재정지출확대 효과
 - 서서히 탈출전략(Exit Strategy) 모색
-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품공급 차질, 남유럽의 재정위기 심화,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
 - 미국의 Double -dip 가능성 ? (최근 다소 호전)
 - EU(특히 남유럽)의 재정위기 심화

1. 최근 세계 경제 동향 (2)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미국, EU, 일본의 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1. 최근 세계 경제 동향 (3)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

나름 성장세를 지속

- 중국 2/4분기 9.5%, 3/4분기 9.1% 성장
- 인도 1/4분기 7.8%, 2/4분기 7.7%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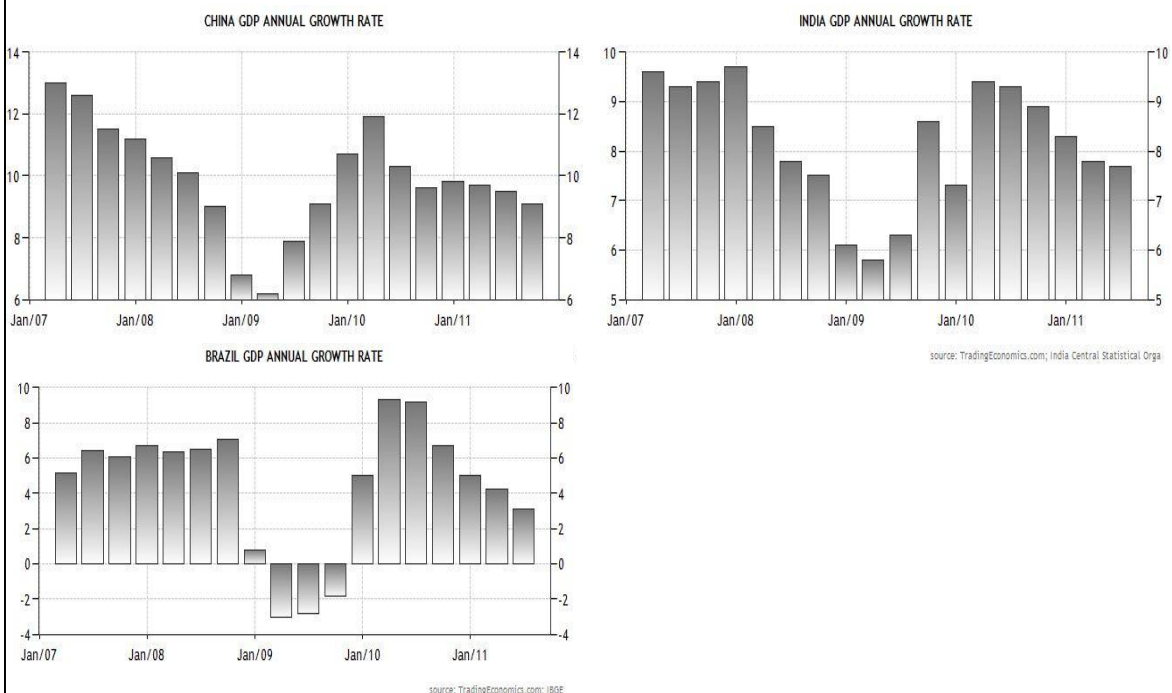
다만 물가불안이 심화되어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

- 중국 3차례의 금리 인상(0.75%p)
- 인도 6차례의 금리 인상 (2%p)

1. 최근 세계 경제 동향 (4)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 인도, 브라질 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1. 최근 세계 경제 동향 (5)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의 물가상승률과 금리



1. 최근 세계 경제 동향 (5)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인도의 물가상승률과 금리



2. 2012 세계 경제 전망 (1)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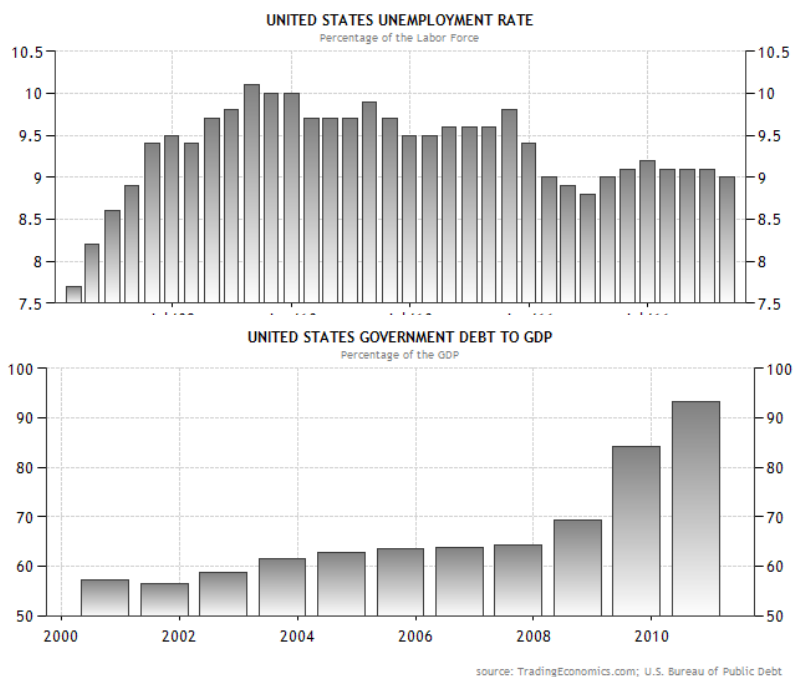
■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

- 선진국은 주택과 고용부진으로 민간부문 회복 지연
 - 높은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음
 -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지출 확대에도 한계
-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은 성장세 지속
 - 그러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유동성 관리
 - 선진국의 수요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 특히 자원수출에 의존한 경제는 성장이 다소 하락

2. 2012 세계 경제 전망 (2)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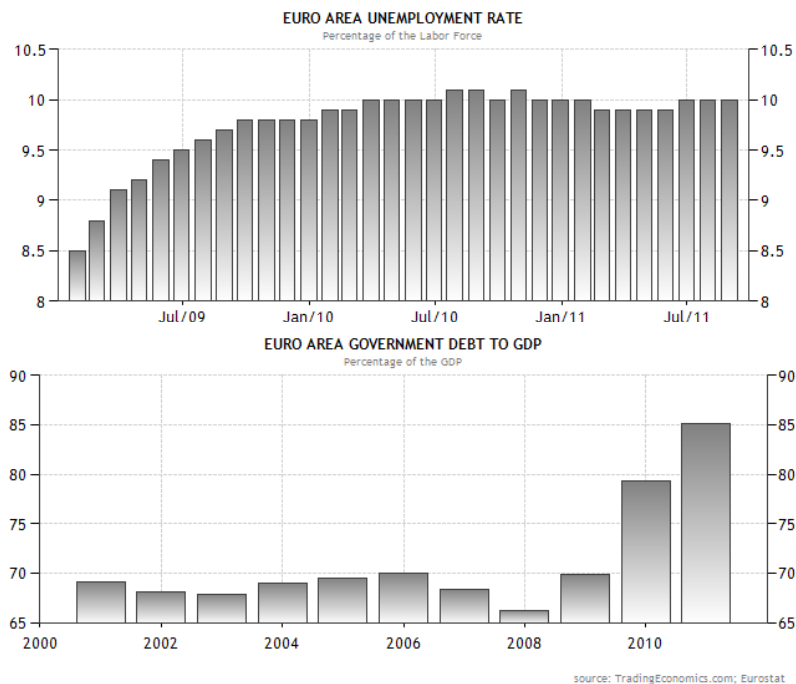
■ 미국의 실업률과 정부 부채



2. 2012 세계 경제 전망 (3)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EU의 실업률과 정부 부채



2. 2012 세계 경제 전망 (4)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2년 세계 경제는 3.5~4.0% 성장

- 미국: 1.3~2.0%, EU: 0.8~1.4%
- 중국: 8.4~9.0%, 인도: 7~8%

2012년 세계 ·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세계	미국	EU	중국	일본
삼성경제연구소	3.5	1.3	0.8	8.4	1.7
LG경제연구원	3.5	1.7	1.0	8.6	2.8
현대경제연구원	4.0	2.0	1.4	9.0	2.6
IMF	4.0	1.8	1.1	9.0	2.3
세계은행	3.6	2.9	1.8	8.7	2.6
골드만삭스	3.5	1.4	0.1	8.6	-

3. 2012 세계 무역 전망

세계 무역도 둔화가 불가피

– 2011: 7.5% 성장, 2012: 5.8% 성장

	2009	2010	2011	2012
세계 (상품+서비스)	△ 10.7	12.8	7.5	5.8
선진경제권 수출	△ 11.9	12.3	6.2	5.2
수입	△ 12.4	11.7	5.9	4.0
개도경제권 수출	△ 7.7	13.6	9.4	7.8
수입	△ 8.0	14.9	11.1	8.1

4. DDA 협상 동향과 전망(1)

올해 12. 15~17 WTO 각료회의

긍정적 시각

- Small package 나올 수도
- DDA 파국은 피해야

비판적 시각

- 진전 없이 끝날 것
- 미국, EU 등 선진국 대 중국, 인도 등 개도국 대결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

- 그래도 이후 계획은 제시될 가능성

4. DDA협상 동향과 전망 (2)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2~13년은 동면기

- 2012년은 주요국의 국내 정치 일정 때문 협상 진전 어려움
- 이후 통상정책의 점검/진전 기간이 필요 (2013년)

우리로서는 내부 점검의 기회

- 협상 방식의 변화에 준비 : 예) 복수국간 협정

5. FTA 추진 전망 (1)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발효된 FTA

- 7개 FTA, 44개국

01

발효된 FTA

+ MORE

	한-칠레 FTA	2004.4.1 발효
	한-싱가포르 FTA	2006.3.2 발효
	한-EFTA FTA	2006.9.1 발효
	한-ASEAN FTA	상품 2007.6.1 발효 서비스 2009.5.1 발효 투자 2009.9.1 발효
	한-인도 CEPA	2010.1.1 발효
	한-EU FTA	2011.7.1 잠정발효
	한-페루 FTA	2011.8.1 발효

5. FTA 추진 전망 (2)

협상중인 FTA

- 7개 FTA, 12개국

03

협상 FTA

+ MORE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한-GCC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터키 FTA

5. FTA 추진 전망 (3)

여건 조성중인 FTA

- 11개 FTA, 19개국

04

공동연구 또는
여건조성중인
FTA

+ MORE

 한-일본 FTA

 한-중국 FTA

 한-중-일 FTA

 한-MERCOSUR TA

 한-이스라엘 FTA

 한-베트남 FTA

 한-몽골 FTA

 한-중미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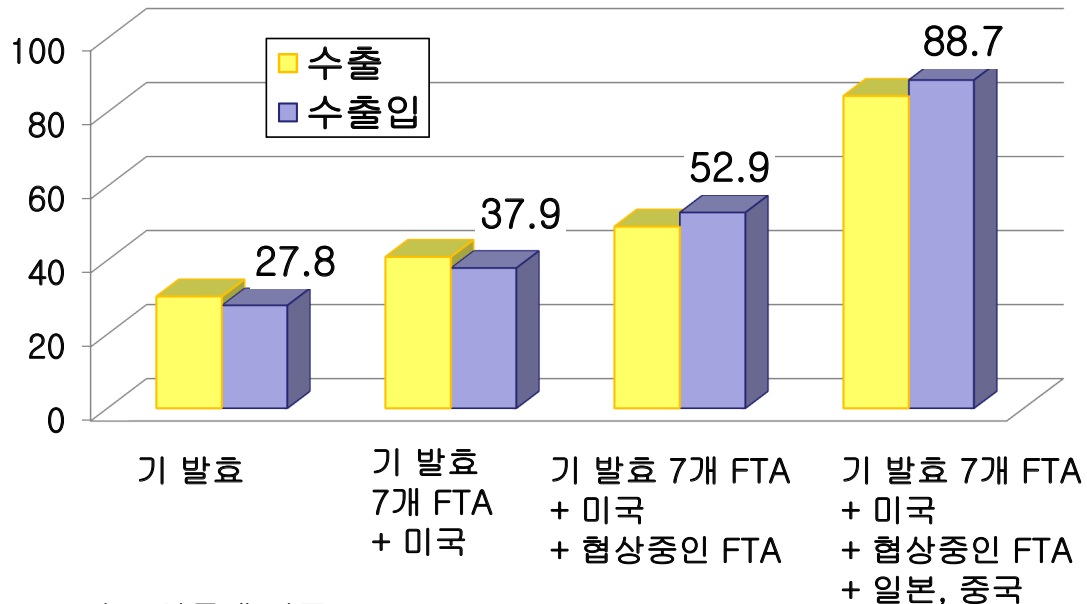
 한-말레이시아 FTA

 한-인도네시아 FTA

5. FTA 추진 전망 (4)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Global FTA Network 구축: 80% 이상 목표



2010년 무역통계 기준

5. FTA 추진 전망 (5)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 FTA 타결

–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타결 가능성 높아

➤ 쟁점 대부분이 해소된 상태

한-중국/일본 FTA 개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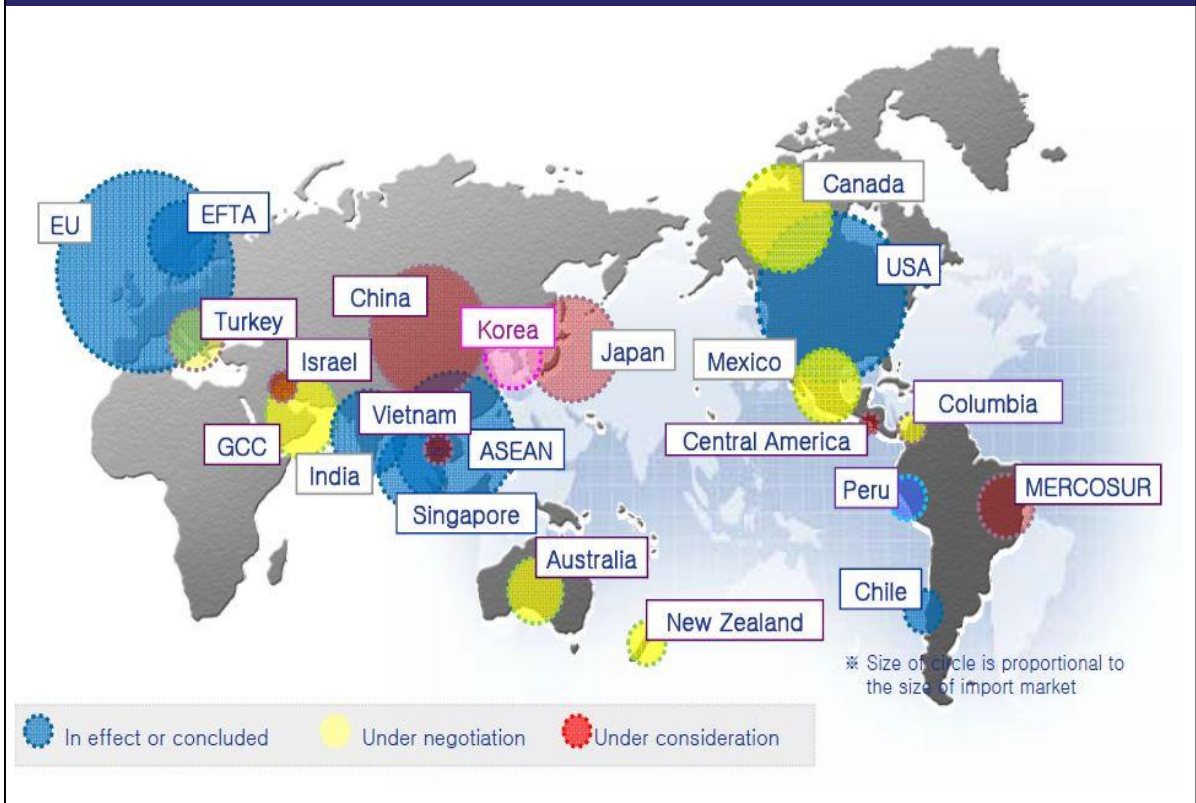
– 내년 중 협상 개시 가능성

➤ 그러나 한-미 FTA 발효가 전제되어야

한-인도네시아/베트남 FTA 개시

<한국의 FTA 지도>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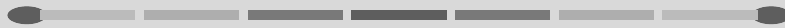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주제발표 2

“100대 수산현안과제”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2011년 100대 수산 현안 과제



수산연구본부장
김정봉

1

2



목 차

-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2 추진경과
- 3 100대 수산 현안 과제 현황
- 4 사업 추진 전략
- 5 향후 추진 계획



2011년 100대 수산현안과제

-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2 사업 추진 경과
- 3 100대 수산 현안 과제 현황
- 4 사업 추진 전략
- 5 향후 추진 계획



I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I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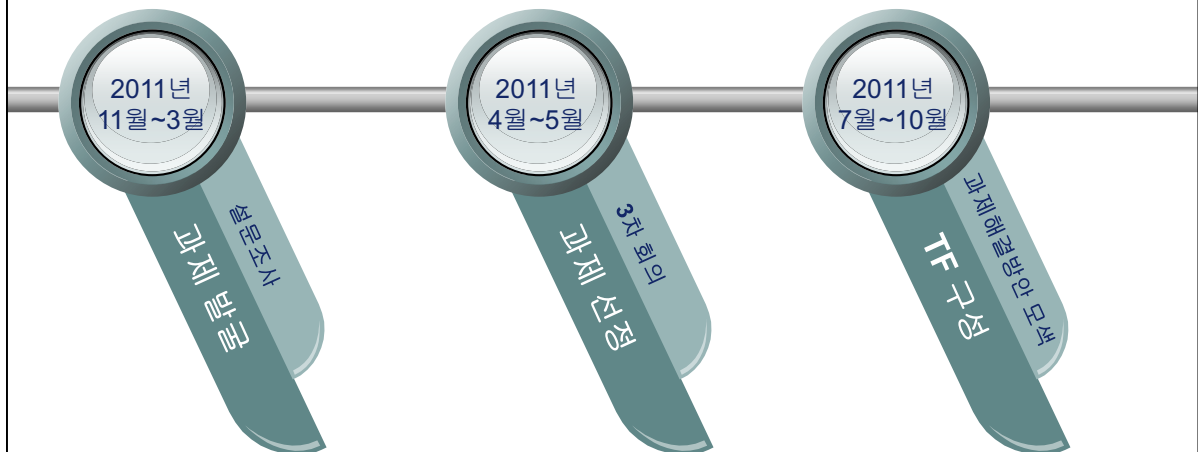
2011년 100대 수산 현안 과제





II . 사업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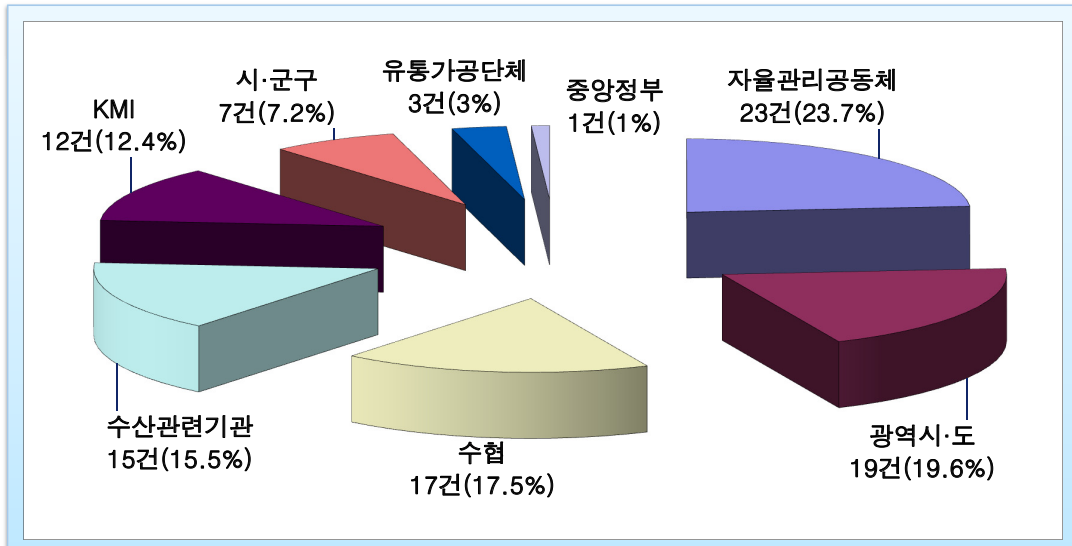
II . 사업 추진 경과

수산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

- ◆ 조사 대상 : 총 10개 분류, 1,226개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대상
 - 광역시도(14), 시군구(83), 수협(93), 수산관련기관(34), 유통·가공단체(31), 양식단체(12), 수산종합기업(84), 학계(32), 소비자단체(7), 자율관리공동체(836)
- ◆ 조사기간 : 2010. 11~ 2011. 3(5개월)
- ◆ 조사방법 : 공문, 팩스, 전화인터뷰
- ◆ 조사결과 : 총 164건 접수
 - 설문조사 대상기관 : 65건
 - 규제개혁 권의서 : 87건
 - KMI 내부 제안 : 12건

II . 사업 추진 경과

수산현안과제 제안 기관



II . 사업 추진 경과

수산현안과제 1차 선정

- ◆ 일시 : 2011. 4. 14(목)
- ◆ 선정위원 : KMI 수산연구본부장, 실장, TF요원
- ◆ 선정대상 : 접수된 164개 안건
- ◆ 과제분류기준 설정
 - 과제의 성격에 따라 4개로 분류 - 법제도 개선, 정부지원, 정부시책, 현장애로
- ◆ 선정 결과 : 97건
 - 법제도 개선 - 41건(42%)
 - 정부지원 - 10건(10%)
 - 정부시책 - 38건(39%)
 - 현장 애로 - 8건(8%)



II . 사업 추진 경과

수산현안과제 2차 선정

- ◆ 일시 : 2011. 4. 19(화)
- ◆ 선정위원 : 16명
 - KMI(8), 농림수산식품부(2), 수협중앙회(2), 수산업경영인연합회(1), 한국수산회(1), 한국어촌어항협회(1), 한국원양산업협회(1)
- ◆ 선정대상 : 111건
 - 1차 선정 과제 97건 + 추가제안과제 14건(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 ◆ 선정 결과
 - 선정과제 : 84건
 - 재검토과제 : 12건



II . 사업 추진 경과

수산현안과제 3차 선정

- ◆ 일시 : 2011. 5. 2(월)
- ◆ 선정위원 : KMI 수산연구본부장, 실장, TF요원 5명
- ◆ 선정대상 : 47건
 - 2차 선정시 재검토 과제 : 12건
 - 수협중앙회 추가 제안과제 : 35건
- ◆ 선정 결과 : 16건 추가 선정
- ◆ 선정과제 : 100건
 - 법제도 35건/정부지원 14건/정부시책 49건/현장으로 2건



II . 사업 추진 경과

수산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TF 구성

◆ 목적

- 100대 수산현안과제의 세부 검토를 통한 내용 보완
- 100대 수산현안과제집 발간
- 100대 수산현안과제 대책 수립 및 문제 해결 추진

◆ 시기 : 2011. 7

◆ 구성 및 운영 원칙

- 구성 : KMI 수산연구본부 2실, 수산업관측센터, 글로벌수산연구실 수산분야 연구진
- 연구원급 이상으로 분야별 과제 수 및 주 연구분야 고려 후 대책반 구성
- 선정된 100대 수산현안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
- 면허어업, 허가어업, 수산식품, 어촌어항 · 관광, 수산재정 · 금융, 국제수산



2011년 100대 수산 현안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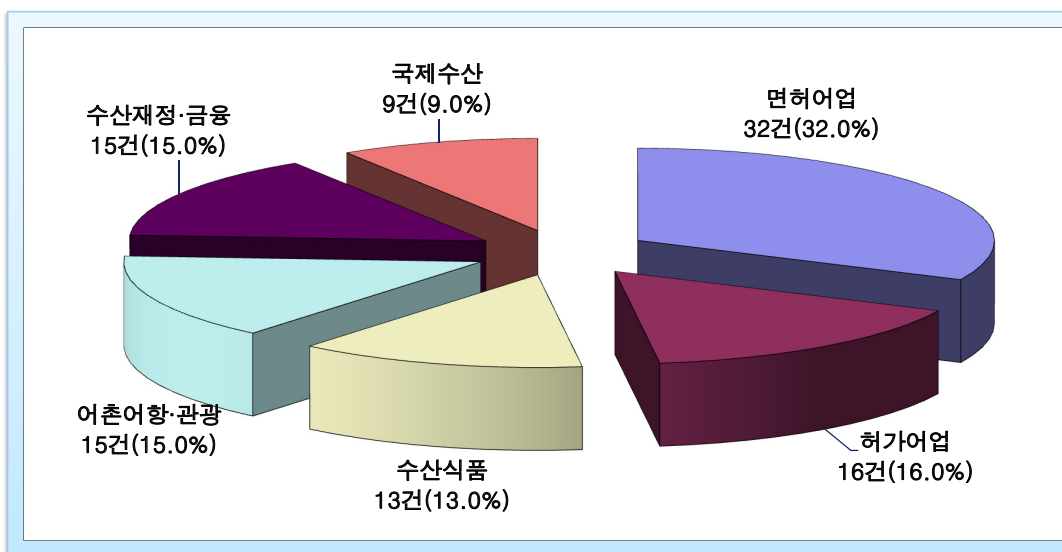
Ⅲ. 100대 수산 현안 과제 현황

100대 수산현안과제 분류

과제분류	과제 수	단기	중기	장기
면허어업	32	8	20	4
허가어업	16	5	8	3
수산식품	13	2	9	2
어촌어항 · 관광	15	8	5	2
수산재정 · 금융	15	5	2	8
국제수산	9	2	3	4
합 계	100(100%)	30(30%)	47(47%)	23(23%)

Ⅲ. 100대 수산 현안 과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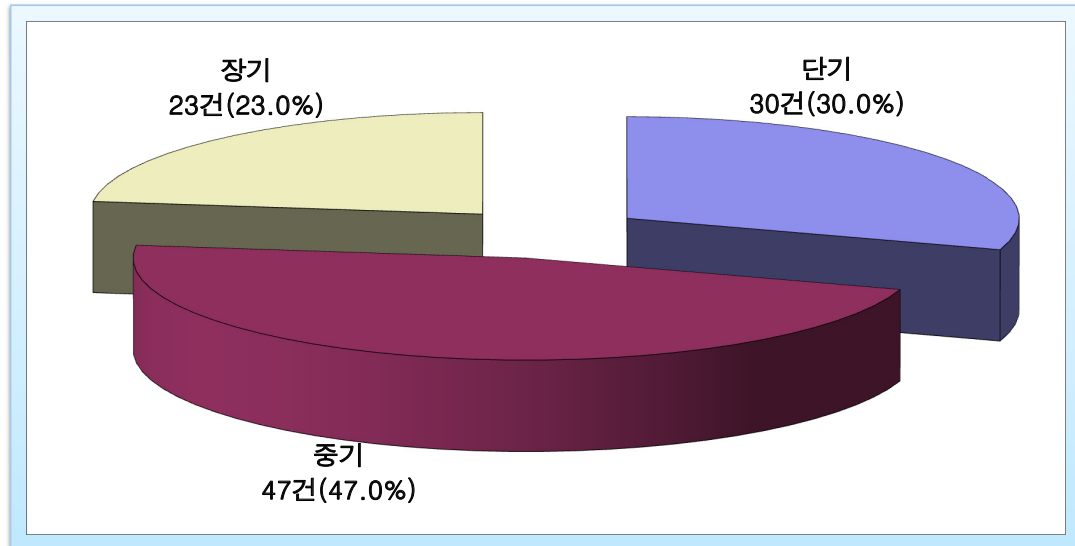
100대 수산현안과제 분야별 현황





Ⅲ. 100대 수산 현안 과제 현황

100대 수산현안과제 기간별 현황



Ⅲ. 100대 수산 현안 과제 현황

부문별 주요 과제 - 1

분류	주요 과제
면허어업	- 양식시설기준 확대 - 농지를 이용한 육상양식 관련 규제 완화, 철폐 - 양식면허 업무 간소화 - 마을어장 수산자원 관리, 채포 방법 개선 - 갯벌 복원 및 갯벌 어업 활성화 -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체제 개선 - 어류양식 백신, 질병, 사료 관련 R&D 및 지원 확대 - 패류 및 해삼양식 관련 지원
허가어업	-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 불법어업 단속 방법 개선 및 과징금 제도 개선 - 수산장비 임대 및 시설 지원 - 내수면 어업관련 제도 개선 - 동중국해 호망어업 실태 분석



III. 100대 수산 현안 과제 현황

부문별 주요 과제 - 2

분류	주요 과제
수산식품	• 수산물 물가안정 사업 도입 • 수산동물 병성감정기관 지정 요건 개선 •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확대 • 도매시장 매취사업 허용 •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확대 • 산지 중매인 제도 개선 및 산지 위판장 활성화 • 수산물 선도 관리 및 가공 관련 제도 개선
어촌어항 · 관광	• 어항배후부지 활성화 • 지속가능한 어촌후계인력 육성 • 낙후지역 해양레저사업 활성화 및 어장 생태체험장 개발 · 운영 • 바다관광산업 종합 육성 • 학생 어촌체험교육 활성화



III. 100대 수산 현안 과제 현황

부문별 주요 과제 - 3

분류	주요 과제
수산재정 · 금융	• 어획물 담보 취급 활성화 • 수산인 안전공제제도 개선 • 농수산업자 B2B 전자보증서비스 도입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 연근해 어선원 근로소득, 어업소득 비과세 제도 정비 • 소득보전 직불제 확대 • 어선펀드 조성
국제수산	• 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지원 대책 • 외국인 선원 복리 후생 및 송입 제도 관련 • 해외수산자원개발촉진 제도 도입 • 수출보험제도 개선 • 해외어항 · 어장 개발 사업 • 글로벌 수산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2011년 100대 수산 현안 과제

-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2 사업 추진 경과
- 3 100대 수산 현안 과제 현황
- 4 **사업 추진 전략**
- 5 향후 추진 계획



IV. 사업 추진 전략

KMI 수산현안과제 추진 TF 운영

- ◆ 현안과제별 담당제 실시
- ◆ 제도, 시책, 현장으로 중심으로 대책 수립
- ◆ 범수산실무협의회와 연계 추진

범수산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

- ◆ 목적 : 100대 수산현안과제 대책 수립 및 해결
- ◆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 간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대상 : 정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단체
- ◆ 활동내용
 - 농림수산식품부 ‘바다신문고’ 연계
 - 현안과제 해결책 모색
 - 정부 협의
 - 신규 현안과제 발굴 등



IV. 사업 추진 전략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목적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과제 해결

◆ 내용

- 현안사항 중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조사·연구를 통한 대책 수립

◆ 목적 : 중·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대책 수립

◆ 주관 및 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부



2011년 100대 수산 현안 과제





V. 향후 추진 계획



범수산
실무협의회
구성

공청회 및
세미나

단기과제 추진

중기과제 추진

백서 발간
- 현안과제
해결방안

감사합니다!



자료 : 100대 수산 현안 과제 리스트

◆ 면허허업

과제명	구분	제안기관
양식시설기준 개선	(1-01-0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어촌계
양식방법에 따른 양식물 제한 개선	(1-01-02)	경상북도 영덕군 수산과
내수면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개정	(1-01-03)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양어장 설치 관련 규제 개선	(1-01-04)	전라북도 농업농촌과
양식면허 업무개선 통한 행정 간소화	(1-01-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체계 개편	(1-01-06)	강원도 강릉시 정동1리어촌계
유산균을 이용한 경구용 백신사료 개발	(1-01-07)	경북어류양식수협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 기반 육성	(1-01-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갯벌복원사업의 수산업 측면 고려	(1-02-09)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1-02-10)	경상남도 통영시 외항어촌계
마을어업 채포방법 개선	(1-02-1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남부수산업협동조합
굴 패각사업장 폐기물 제외 법령 개정	(1-02-12)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면허어장 청소 주기 개선	(1-02-13)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농업진흥구역내수산물양식시설설치제한완화	(1-02-14)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제 전환	(1-02-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복합양식 어업대상 확대	(1-02-16)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참고막 인공종묘 생산 지원	(1-02-17)	전라남도 보성군 호산어촌계
개조개 중간육성종묘 보급 및 시설사업지원	(1-02-18)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확대	(1-02-1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수면 어장 및 수산자원 보호	(1-02-20)	경기도 파주시 파주내수면어업자율관리공동체
해삼축제식 양식 제도 도입	(1-02-21)	충청남도 태안남부수산업협동조합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	(1-02-22)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폐사비식용 어류 활용 유기질 비료 생산	(1-02-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종자 산업화제도	(1-02-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넙치양식 폐사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1-02-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 갯벌어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개발	(1-02-26)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02-27)	한국어촌어항협회
어분 수급 안정화 대책	(1-02-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장 매매거래소 및 어장은행 설치	(1-03-29)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종묘관리사업의 계약 추진방식 조정	(1-03-30)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자연재해 대비 양식시설 개발	(1-03-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허가허업

과제명	구분	제안기관
불법어업 지도단속방법 개선	(2-01-01)	서해어업관리단
수산업 과징금제도 개선	(2-01-02)	부산광역시
신고어업 주소변경신고 간편화	(2-01-03)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비 임대사업의 도덕적 해이	(2-01-04)	강원도 양양군 해양수산물과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을 확대	(2-01-0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수면 어업 보호덧망 합법화	(2-02-06)	충청북도 충주시 중주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
내수면고무보트낚시규제강화	(2-02-07)	충청북도 충주시 중주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
소형 어선상가(漁船上架) 시설 지원 사업	(2-02-08)	포항수산업협동조합
2톤 이상 어선기관 변경개조(발주) 허가폐지	(2-02-09)	인천 남동구 지역경제과
통발 구입시 폐통발 반납 지원	(2-02-10)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어촌계
어구 수리시설 설치규제 완화	(2-02-11)	한국수산업경영인증양연합회
동중국해 호망어업 실태분석	(2-02-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선원 팽창형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보급 지원	(2-02-1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연근해어업 수역구분을 통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2-03-14)	전라북도 해양수산물과
기선권현망어업 표준 어구어법 및 선형제도 개선	(2-03-1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잠수기어업 분사기의 생태계 영향 조사	(2-03-16)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 수산식품

과제명	구분	제안기관
수산물 물가안정사업 도입	(3-01-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기관 지정요건 개선	(3-01-02)	충청북도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확대	(3-02-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특화 수산식품 판매촉진사업	(3-02-04)	경상남도 거제시 창호자율관리공동체
단순가공 진공포장 수산물 규제완화	(3-02-0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
마비성 패독의 안전관리 기준 개선	(3-02-06)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도매시장법인의 매취사업 허용	(3-02-07)	노량진수산(주)
일반산업용 말라카이트그린 관리 강화	(3-02-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 확대	(3-02-09)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제도 개선	(3-02-10)	(사)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수산물 품목별 국가안전성 기준 설정	(3-02-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산지위판장활성화방안	(3-03-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 선도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3-03-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어촌어항·관광

과제명	구분	제안기관
어항배후부지 이용 활성화 사업	(4-01-01)	한국어촌어항협회
지속가능한 어촌후계인력 육성정책 개편	(4-01-02)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낙후지역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4-01-03)	경상남도 통영시 동제어촌계
어장 생태체험장 개발·운영	(4-01-04)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만 지정·관리 심의위원회 어업인 참여	(4-01-05)	경상남도 진해수산업협동조합
바다체험역및해안선녹색자전거	(4-01-06)	한국어촌어항협회
바다관광산업융합육성	(4-01-07)	한국어촌어항협회
초중고학생어촌체험교육활성화	(4-01-08)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어항·어장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4-02-09)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유지준설시스템	(4-02-10)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선을 이용한 바다정화사업 실시 허용	(4-02-11)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어촌 공공 서비스의 거점 구축	(4-02-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 고령화에 따른 자동화기기 지원	(4-02-13)	전라남도 목포시 구로어촌계
하천 우수의 연안 유입관리	(4-03-14)	서귀포 신산어촌계
어장정화선 등록여건 완화	(4-03-15)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 수산 재정·금융

과제명	구분	제안기관
어획물담보취급활성화	(5-01-01)	한국원양산업협회
수산인 안전공제 제도개선	(5-01-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업용 전기사용료의 차등부과 개선	(5-01-03)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제식 양식장 대부요율 개선	(5-01-0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선외기 실손보상특약 허용 추진	(5-02-0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B2B전자보증서비스 도입	(5-02-0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금 지급제도 개선	(5-02-07)	전라북도 부안수산사무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5-03-08)	서산시수산업협동조합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5-03-0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용유류 공급제도 개선	(5-03-10)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	(5-03-11)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확대	(5-03-12)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연 재난시 수산물 및 시설복구비 지원개선	(5-03-13)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어선펀드조성	(5-03-14)	한국원양산업협회
어가부채 해결 방안 마련	(5-03-15)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국제수산

과제명	구분	제안기관
활넙치 수출검사 제도 개선	(6-01-01)	전라남도 해양생물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지원대책	(6-01-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어선원 복리 후생 사업	(6-02-03)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해외수산자원개발촉진을 위한 제도	(6-02-04)	한국원양산업협회
IMO-STCW-F 협약발효 영향	(6-03-05)	한국원양산업협회
외국인 선원 송입 제도 개선	(6-03-0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출보험제도 개선	(6-03-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어항·어장 개발사업	(6-03-08)	한국어촌어항협회
글로벌 수산업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6-03-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과제번호 구성 : ○-○-○ : 대분류(부문)-기간(단1,중2,장3)-과제일련번호

MEMO

MEMO

MEMO